

(앞면)

제	호	농수산물유통관리검사원증	(사 진)
			2×3cm
소	속		
직	급		
성	명		
주민등록번호			
<p>위 사람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관리와 원산지표시에 관한 검사원임을 증명합니다.</p>			
		년	월
		일	일
○ ○ ○ ○			[인]

주: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에 관한 조사 및 검사만을 행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검사원증의 명칭을 "농수산물원산지표시검사원증"으로 하고, 증명문을 "위 사람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검사원임을 증명합니다"로 한다.

27273-05611일

90mm×60mm

93.8.31 승인

(인쇄용지(특급) 120g/m²)

(뒷면)
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. 2. 이 사람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자.생산자단체.판매업자 또는 가공업자등에 대하여 질문 또는 사업장.창고.서류등을 검사할 권한이 있습니다.
--

주: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에 관한 조사 및 검사만을 행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제2호를"2.이사람은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자.생산자단체.판매업자 또는 가공업자등에 대하여 질문 또는 사업장.창고.서류등을 검사할 권한이 있습니다"로 한다.